

##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5일
신고인	업종	등록번호 제 호
	상호(명칭)	
	대표자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영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 : )
변경사항	변경 구분	
	변경 연월일	
	변경 후	
	변경 전	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호(명칭)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</li> <li>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,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</li> <li>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수첩,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국가기술자격증</li> <li>나.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</li> </ul> </li> <li>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음
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호(명칭),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: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)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외국인인 경우)</li> <li>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자격 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</li> </ol>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